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85,000,000	44,550,000
일반회계	1,278,800,000	38,364,000
특별회계	206,200,000	6,186,000
공기업특별회계	51,900,000	1,557,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000,000	99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900,000	567,000
기타특별회계	154,300,000	4,62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8,638,000	259,1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10,000	99,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88,000	20,640
주택사업특별회계	386,000	11,580
치수사업특별회계	18,198,000	545,940
주차장특별회계	5,046,000	151,380
대지보상특별회계	291,000	8,73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3,684,000	3,410,52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588,000	107,64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8,000	12,5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3,000	1,5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85,652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8,8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99,652천원, 내부유보금 486,000천원)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